

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 ○위 치 : 마포구 성산동 590, 592 일대 ○내 용 · 일반상업지역 → 유통상업지역(54,000㎡) · 도시계획사항 : 일반상업지역 · 주민 의견청취 결과 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본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마포구 성산동 590, 592 일대 현재의 자동차검사장 54,000㎡의 일반상업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 ○자동차검사장은 특정한 설비의 설치가 요구된 시설이므로 시설의 성질에 쫓아 일반상업지역보다는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므로, ○시에서 제출한 변경결정안에 동의의견임.</p> <p>5.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67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 ○위 치 : 강남구 청담동 47 일대 ○내 용 · 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 → 준주거지역(44,300㎡) · 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44,300㎡) · 주민 의견청취 결과 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강남구 청담동 47 일대 44,300㎡에 대한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(안)은 이 지역을 자치구에서 청담생</p>	의안 번호	67	<p>활권 중심지로 정해진 지역으로, ○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</p> <p>5. 심사결과 시 결정(지정)안과 의견이 같음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68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</p> <p>3. 주요요지 ○위 치 : 강남구 대치동 937 일대 ○내 용 · 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 → 준주거지역(44,200㎡) · 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44,200㎡) · 주민 의견청취 결과 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본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안은 강남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대치동 937 일대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도가 높은 이 지역을 대치생활권 중심지로 정하고, ○이 지역을 중심기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(안)은 이 지역 개발을 위한 타당한 변경안으로 사료되어 시가 제출한 (안)에 각각 동의 의견임.</p> <p>5. 심사결과 시 결정(지정)안과 의견이 같음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69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지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</p>	의안 번호	68	의안 번호	69
의안 번호	67						
의안 번호	68						
의안 번호	69						